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 사유	
노O진	1995.8.18.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이하생략)	실업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조기재취업수당 1/2 시점 이후 취업으로 인한 부지급 통보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6.7.3. - 2026.7.17. (15일간)
5. 문의사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강희정(☎ 031-828-0919)